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성윤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8582
----------	-------

발의연월일 : 2026. 4. 23.

발 의 자 : 이성윤 · 김 윤 · 박균택
김준혁 · 최기상 · 조계원
손명수 · 복기왕 · 서삼석
윤준병 · 서미화 · 양부남
윤종균 · 차규근 · 이정문
김 현 의원(16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 헌법은 모든 국민의 집회 및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으며, 이를 구체화한 현행법은 집회 및 시위의 권리 보장과 공공의 안녕질서 간의 조화를 도모하고 있음.

한편, 최근 헌법재판소는 미신고 옥외집회 주최자에 관한 처벌규정과 관련하여, “객관적으로 타인의 기본권이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침해할 위험성이 매우 적고 실제로 평화롭게 진행·종료된 집회까지 예외 없이 처벌하는 것으로서 집회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보아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고 결정하였음(2026. 2. 26. 2021헌바168등 참조).

이에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를 반영하여 미신고 옥외집회를 행정적 제재대상으로 전환하는 한편, 실제 집회가 공공의 안녕질서를 해치지 않은 등 일정한 경우를 과태료 부과 예외사항으로 인정하고자 함. 국회

에 부여된 입법의무에 충실히 임하는 동시에, 공공질서 유지와 국민 기본권 보호를 합리적으로 아우르려는 것임(안 제22조제2항 등).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 중 “제6조제1항”을 “제6조제1항(옥외집회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제2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8조제4항에 해당하는 먼저 신고된 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6조제3항을 위반한 경우
2. 옥외집회를 주최하려는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6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다만 공공의 안녕질서를 침해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된 집회로서 그 종료 후 12시간 이내에 제6조제1항 각 호의 사항 모두와 미신고 사유를 기재한 신고서를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2조(벌칙) ① (생 략) ② 제5조제1항 또는 제6조제1항을 위반하거나 제8조에 따라 금지를 통고한 집회 또는 시위를 주최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 ④ (생 략)</p> <p>제26조(과태료) ① 제8조제4항에 해당하는 먼저 신고된 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6조제3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p>	<p>제22조(벌칙) ① (현행과 같음) ②----- 제6조제1항 (옥외집회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 ---.</p> <p>③ · ④ (현행과 같음)</p> <p>제2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8조제4항에 해당하는 먼저 신고된 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6조제3항을 위반한 경우 2. 옥외집회를 주최하려는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6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다만 공공의 안녕질서를 침해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된 집회로서 그 종료 후 12시간 이내에 제6조제1항 각 호의 사항 모두와 미신고 사유를 기재한 신고서를

② (생 략)	<u>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한 경 우에는 그리하지 아니하다.</u> ② (현행과 같음)
---------	---